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 2008년 1월 1일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중심으로 -

- 노동부 -

2007.11.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개정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 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안 제22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안 제22조의4 신설)

- (1) 필수공익사업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 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절한 대체근로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을 “법 제38조제1항·제2항”으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

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으



로, “노동부령이”를 “노동부령으로”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 제34조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정하는 경우에 해당”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제21조제3호 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 · 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라. 「우편법」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 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 · 관리업무

별표 1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등) ① · ② (생 략)</p> <p>③ 20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p> <p>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1. (생 략)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p> <p>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사용자는 징역행위가 법 제38조제1항 · 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u>관할노동위원회</u>에 신고하여야 한다.</p> | <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등)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_____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 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 (폭 력 행 위 등 의 신고) ① ----- ----- 법 제 38조 제 1항 · 제 2항 ----- ----- <u>관할 노동위원회</u>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 (생 략) 제19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p>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2조(중지명령)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 <p>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_____</p> <p>_____.</p> <p>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p> <p>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p>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3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p> <p>1. ~ 10. (생략)</p> <p>11.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의 신고의 수리</p> <p>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명령</p> <p>13. · 14. (생략)</p> <p>15.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 및 통보</p> <p>16. ~ 18. (생략)</p> <p>②(생략)</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생략)</p> <p>③ 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생략)</p> | <p>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 관할 노동위원회-----.</p> <p>②(현행과 같음)</p> <p>제3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7조에 따라----- 각 호-----</p> <p>-----</p> <p>-----</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2. 제4항에 따른 -----</p> <p>----- 중지통보</p> <p>13. · 14. (현행과 같음)</p> <p>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p> <p>16. ~ 18.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정하는 경우에 해당-----</p> <p>-----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현행과 같음)</p> |